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모임 금지 조치 (인원제한) 추가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명시 〉

■ 최승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480호)

2021.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수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모임 금지 조치(인원 제한) 추가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명시	3
(1)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인원 제한 추가 (안 제12조의2제1항)	4
(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명시 (안 제12조의2제1항, 부칙 제3조)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최승재의원 등 20인
2. 발의연월일 : 2021. 9. 8.
3. 회부연월일 : 2021. 9.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 7. 7. 공포, 2021. 10. 8. 시행)되었음.

그런데 기존에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피해지원금은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고 개정 법률 역시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2021년 7월 12일부터 시작된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식당 등의 소상공인들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의견이 분분함.

이에 방역당국의 행정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보상

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적모임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직
간접적인 손실도 보상하여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실보상의
취지에 맞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
제3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모임 금지 조치(인원제한) 추가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명시 (안 제12조의2제1항)

개정안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한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u>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u>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 ----- ----- ----- ----- ----- <u>소상공인(사적모임 금지 조치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u> ----- ----- <u>해당 소상공인(해당 조치 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u> -----

② ~ ⑥ (생략)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u><신설></u>	-----.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29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3조(폐업한 소상공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u>
--	---

(1)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에 인원 제한 추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와 관련해서,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1)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법률의 위임을 받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를 시행령」 제4조의4제1항²⁾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80%)”로 정하여 매출액 감소액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손실보상금 산정 산식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80%)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 (2019년 영업이익률+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자료: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명시한 사적모임 제한·금지 조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방역지침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하나로서 일정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적 모임을 제한·금지하는 것으로, 동 조치는 2020년 12월 24일 성탄절 및 연말연시 방역조치부터 실시되었고, 2주 ~ 4주 간격으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행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을 수습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 경우에는 그 본부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하여 행한 조치로 한정한다.

로 연장되어, 2021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³⁾.

이 같은 사적모임 제한·금지 조치는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고객의 수가 감소하고,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⁴⁾.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는 소상공인⁵⁾은 손실보상금 산정 시 사적모임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의 손실이 보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포함되는 업종의 예를 들면, 2021년 7월 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이 있음.

한편, 현행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⁶⁾은 사적모임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의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게 됨. 이에 포함되는 업종의 예를 들면,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등과 2021년 7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오락실, PC방 등이 있음⁷⁾.

3) 참고로,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인원 제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2021년 7월 12일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을 초과하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조치도 실시됨.

4) 서울신문 2021. 1. 4.자 기사 “‘5인 모임 금지’ 확대에... 자영업자 “더는 버틸 힘 없다”

URL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4006009&wlog_tag3=naver

5)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6)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7) 보건복지부(2021년 7월)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전체본)” 참고

개정안은 현행 법령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사적모임 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로서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므로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현행 법률에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정부 방역조치의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원칙, 정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의 정도 및 기간, 손실보상의 대상 확대에 인한 재정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명시(안 제12조의2제1항, 부칙 제3조)

개정안 제12조의2제1항의 “소상공인(해당 조치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 부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받고 해당 조치기간 동안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려는 취지임.

개정안 제12조의2제1항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에서 규정한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폐업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부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⁸⁾에 반영되어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참고로, 개정안 부칙 제3조는 2021년 7월 7일 이후 감염병예방법 제

8)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74호)

II. 손실보상의 대상

2. 폐업한 자의 경우 폐업하기 전날까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받고, 이 법 시행일인 2021년 10월 8일 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임. 이와 관련해서 해당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손실보상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법률에 추가적으로 명시할 실익이 높지 않을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465